남해안 게점도시 미당 여수

아름다운 이후 행복한 시 만

제2023-36호 2023년 4월 18일(화)

人



보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시 고 이 여수시 고시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1 제2023-171호 이 여수시 고시 제2023-172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2 0 여수시 고시 제2023-17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3 0 여수시 고시 도로명부여 고시 제2023-175호 4 0 여수시 고시 제2023-176호 도로지정 변경 공고 고소동 1-1번지 13 0 여수시 고시 제2023-17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5 0 여수시 고시 제2023-1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16 이 여수시 고시 제2023-179호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17 0 여수시 고시 제2023-180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 고시 20 공 고 이 여수시 공고 제2023-118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 도로시엄 실시계획 변경 악기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1 0 여수시 공고 제2023-1214호 27 국동항 내 장애물(선박) 제거 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ㅇ 여수시 공고 제2023-1219호 29 이 여수시 공고 제2023-1222호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33 ㅇ 여수시 공고 제2023-122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36 0 여수시 공고 제2023-1230호 2023년도 제2기 임산부・위킹맘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37 이 여수시 공고 제2023-1231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여수시 봉계동 114-4] 39 공유수면 점ㆍ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ㅇ 여수시 공고 제2023-1246호 41 ㅇ 여수시 공고 제2023-12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시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44 0 여수시 공고 제2023-1252호 국동항 내 장애물(요트) 제거 공고 47

기 타

o 여수시 조례	제2023-1857호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o 여수시 조례	제2023-1858호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55
여수시 조례	제2023-1859호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여수시 조례	제2023-1860호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o 여수시 조례	제2023-1861호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o 여수시 조례	제2023-1862호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여수시 조례	제2023-1863호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82
여수시 조례	제2023-1864호	여수시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85
o 여수시 조례	제2023-1865호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89
여수시 조례	제2023-1866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여수시 조례	제2023-1867호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00
이 여수시 조례	제2023-1868호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5
이 여수시 조례	제2023-1869호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1
o 여수시 조례	제2023-1870호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17
여수시 조례	제2023-1871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3-171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3. 4. 13.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여수시 고시 제2023 - 172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피 승	인 자		Ы
(승인일)	장소	면적(m²)	목적	기간	주	소	성	명	고
2023–9 (2023. 4. 13.)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77-1번지 일원	1,402	화정면 개도 모전항 부잔교 설치공사	2023. 4. 13. ~ 2038. 4. 12.	전라남도 시청: (학·	로 1	여수 (섬발전		

2023. 4. 14.

여수시 고시 제2023-17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사업의 목적: 밭작물 재배
-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53-2번지
 - 지적면적: (당초) 1,799m² (변경) 1,806m²
 - 개간면적: (당초) 1,799m² (변경) 1,806m²
- 4. 사 업 비: 111,100,000원
- 5. 사업예정기간: 2022. 12. 5. ~ 2024. 6. 30.
- 6. 사업의 효과: 밭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 7. 사 업 시 행 자 : r주소: 순천시 태봉길 31, 20*동 20*호(조례동,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성명: 김**

2023. 4. 13.

여수시 고시 제2023 - 175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4.

여 수 시 장 (인)

- 1. 고 시 일 : 2023. 4. 14.
-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 4.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신청 또는 직권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도로명고시 및 신청인 통보
도로명이 필요한 자 신청 또는 시장 등 직권	월두더 ⇒ 10일이내	14일 이상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10일 이내	도로명부여 고시

-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음(단,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주소정보팀(☎061-659-3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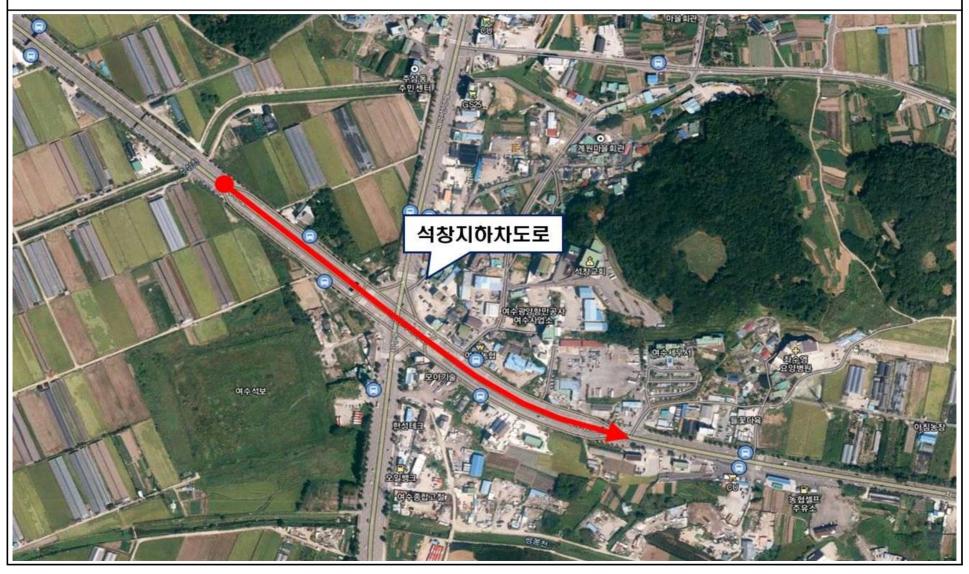
붙임1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익려		해 정	도로		도 로	구 간			기초구간		
일련 번호	도로명	행 정 구 역	도로 위계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 간격(m)	기초 번호	중심선	부여 사유
1	석창지하차도로 (입체도로)	여천동	로	611.2	16	여천동 824-2	여천동 391-1	20	1→62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지하차도 명칭(지명) 등 인용】
2	안도대교로	남면	로	996	12	심장리 80-3	안도리 798-2	20	1→100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교량 명칭(지명) 등 인용】
3	화태대교로	남면 돌산읍	교	3,411	15	신복리 1297-3	화태리 452	20	1→338	현황도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교량 명칭(지명) 등 인용】
4	심곡1길	안산동	길	432	8	안산동 산51-15	안산동 537-4	20	1→44	현황도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5	적금금굴길	화정면	길	1,257	3	적금리 209	적금리 115	20	1→126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6	하과도길	화정면	길	784	3	조발리 328-19	조발리 416-2	20	1→80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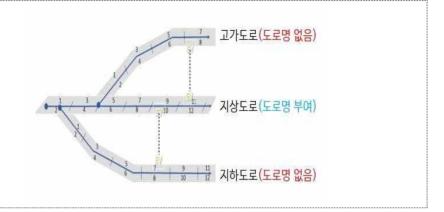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현황도

1. 석창지하차도로(입체도로)



입체도로란?

-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 체도로 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및 도로명 부여 등



2. 안도대교로



3. 화태대교로



4. 심곡1길



5. 적금금굴길



6. 하과도길



[여수시 공고 제2023-176호]

도로 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고소동 1-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4. 14.

여 수 시 장

1. 위 치 : 고소동 1-1번지 외 1필지

2. 도로면적 : 2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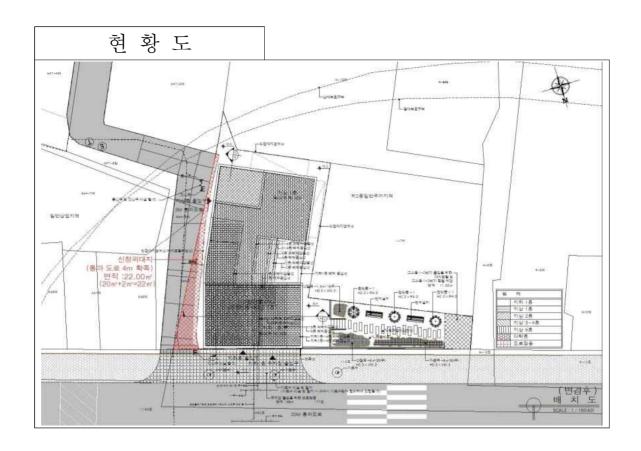
3. 도로길이 : 20.72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	적(m²)	비고
7 七	조세시	<u> </u>	시탁	공부면적	지정면적	□
	계			359	22	
기존	고소동	1-1	대	317	19	
기단	Tr. 27. 2	3	임	13	2	
변경	고소동	1-1	대	341	20	
TI/8	T. 27. 8	3	임	18	2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여수시 고시 제2023-17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사업의 목적: (당초) 밭작물 및 유실수 재배 (변경) 밭작물 및 유실수·잔디 재배
-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610-4번지
 - 대장면적: 2,174m²
 - 개간면적: 2,174m²
- 4. 사업비: 8,030,000원
- 5. 사업예정기간: 2022. 5. 20. ~ 2023. 12. 31.
- 6. 사업의 효과: 밭작물 및 유실수 재배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7. 사업시행자: ┌주소: 여수시 학동북4길7, 1**동 2***호, 학동

L성명: 서**

2023. 4. 17.

여수시 고시 제2023 - 17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가번호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사용	점용	사용		허가받은	자		변경	병사항(허가기	<u>가)</u>	
(변	[경일자)	10 NO 01	면적(㎡)	목	적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경후	
20 (202		돌산읍 우두리 780-5 지선 공유수면	5,257	선박수리원 돌제 및 운	부잔교	어구시	돌산읍 길 13		조선(주) 대한]	2018. ~ 2023. 4		2023. 2028.	-	1. 30.

2023. 4. 18.

여수시 고시 제2023-179호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7.

여수시장(인)

- 1. 고 시 일 : 2023년 4월 17일
-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 둔병도길 1차종속도로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조서 및 현황도 1부.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조서

	도로위		행정	도 로 구 간					-11-11-10			
구분	계	도로명	구역	시 점	종 점	길이 (m)	폭(m)	간격(m)	기초번호시 작	기초번호 끝	폐지사유	비고
폐지	길 (종속 도로)	둔병도길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00-2	화정면 조발리 434	484	3	20	32-1	32-48	주도로로 도로명 부여	중심선 도면참조

도로구간 폐지 현황도



여수시 고시 제2023 - 180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피 승	인 자		Ы
(승인일)	장소	면적(m²)	목적	기간	주	소	성	명	고
2023–10 (2023. 4. 17.)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72-14번지 일원	1,037	돌산읍 항대항 방파제 확장공사	2023. 4. 17. ~ 2053. 4. 16.	전라남도 시청 <u>:</u> (학:	로 1	여수 (섬발전		

2023. 4. 18.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0. 3. 19. ~ 2024. 12. 31.

사업의 종류 및	사업예정지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명칭(사업명)	(위치)		(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수시 동산동, 관문동 일원	○면적 및 규모 - 면적: 기정 762㎡→ 변경 764㎡(증 2㎡) - 규모: 소로2-458 L=94m, B=8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여수시 도로과	2023. 4. 14. ~2023. 4. 28.(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4. 14. ~ 2023. 4. 28. (14일간) *※초일미산입*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사업담당 ☎061-659-4078, 보상담당 ☎061-659-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mark>경</mark>)

연	토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	의 권리자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지분	비고
1	여수시 동산동	565	구	2,311	27	국토교통부						기정
1	여수시 동산동	565-3	구	21	21	국토교통부						변경
2	여수시 동산동	485-6	도	1198	1	국토교통부						기정
2	여수시 동산동	485-9	도	1	1	국토교통부						변경
3	여수시 동산동	380	도	761	42	여수시						기정
3	여수시 동산동	380	도	755	42	여수시						변경
4	여수시 동산동	231	대	163	60	설*자 김*준	여수시덕충동1339-* 역수시여서동373금호아					기정
4	여수시	231-3	대	62	62	설*자	파트8동***호 여수시 여서2로20, 5동2**호(여서동,금호 아파트)				1/2	변경
	동산동	201 0	"	93	02	김*준	여수시여서동373금호아 파트8동***호				1/2	
5	여수시 동산동	229	대	208	46	박*심	여천시 봉계동 1**					기정
5	여수시 동산동	229-1	대	54	54	여수시						변경
6	여수시 동산동	228	대	238	1	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홍은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 구 을지로 **(을 지로2가) (여수 중앙지점)		기정
6	여수시 동산동	228-1	대	1	1	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홍은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 구 을지로 **(을 지로2가) (여수 중앙지점)		변경
7	여수시 관문동	991	대	116	51	조*훈	여수시 관문서8길 10-*, *층 (관문동)	근저당권	동여수*** 금고	여수시 이순신광 장로 2*5 (종화 동)		기정
7	여수시 관문동	991-1	대	43	43	여수시						변경
8	여수시 관문동	990	대	86	56	김*호	여수시 관문서8길* (관문동)	근저당권	종고***금 고	여수시 이순신광 장로 2*5 (종화 동)		기정
8	여수시 관문동	990-1	대	53	53	여수시						변경
9	여수시 관문동	976	도	1,079	110	국토교통부						기정
9	여수시 관문동	976-5	도	29	29	국토교통부						변경
9-1	여수시 관문동	976-8	도	88	88	국토교통부						변경
10	여수시 관문동	974	대	136	17	이*자	여수시 관문동 97*					기정
10	여수시 관문동	974-1	대	14	14	이*자	여수시 관문동 97*					변경
11	여수시 관문동	973	대	370	121	안*식	여수시 관문동97*	압류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기정
11	여수시 관문동	973-1	대	122	122	안*식	여수시 관문동 97*	압류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변경
12	여수시 관문동	969	대	278	145	김*덕	여수시 관문동 96*					기정
12	여수시 관문동	969-1	대	150	150	재단법인광 주구**교 회유지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0(쌍촌동)					변경

연	토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의 권리자		
번	소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지분	비고
									압류	성동세무서			
								순천시 연향동1378	가압류	**생명 보험(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		
						임*	일	현대아파트 103동10*호	압류	순천세무서			
13	여수시 관문동	968	대	170	51				압류 근저당권	순천시 임*엽	구미시 송정동 188 동양한산이파 트 105동 7**호		기정
	740					임*	엽	구미시 송정동183 동양한신아파트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 동, 국민건강보험 공단)		
								105동70*호	압류 압류	이천세무서 여수시			
									압류	이천시(경기도)			
13	여수시 관문동	968-2	대	45	45	여수	-시	여수시					변경
14	여수시 관문동	968-1	대	45	25	여수	러	여수시					기정
14	여수시 관문동	968-3	대	26	26	여수	-시	여수시					변경
15	여수시 관문동	966	대	60	5	여수	=시	여수시					기정
15	여수시 관문동	966-1	대	8	8	여수	러	여수시					변경
16	여수시 관문동	965-2	대	3	3	여수	러	여수시					기정
16	여수시 관문동	965-2	대	3	3	여수	러	여수시					변경
17	여수시 관문동	964-2	대	156	1	김*	현	여수시 동산동 1**					기정
17	여수시 관문동	964-3	대	1	1	김*	현	여수시 동산동 1**					변경
						김*	철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21길16,512동 11**호(목동, 신내대림아파트)				1/3	
18	여수시 관문동	965-3	대	1	1	김*	석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97,106동 20**호(서초동, 롯데캐슬아파트)				1/3	변경 (추가)
						김*	완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37-48,206동 2**호(장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1/3	
		- 계			762								기정
조계 764													변경

○ 지장물조서(<mark>변경</mark>)

	소:	 재지	물건의	ユスロ		소	: 유 자		이해관기	ᅨ인	
연번	위치	번지	출신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m²)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비고
			건물	슬래브	13.0		시스기 디호디				
			건물	슬래브	2.0	설*자	여수시 덕충동 1339-*				
			건물	슬레이트	76.3		1555 **				
1	동산동	231	건물	슬레이트	2.5						기정
	0 2 0		담장	벽돌	7.2		여수시 여서동				
			대문	철재	1.6	김*준	373 금호아파트 8동 1**호				
			마당	콘크리트	80.5		0당 1**오				

	소:	재지	II 과 이	720		ব	- 유 자		이해관	·계인	
연번	위치	번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m²)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비고
			건물	슬래브	13.0		여수시	", 0			
			건물	슬래브	2.0	1 ., ,	예울마루로 30,				
			건물	슬레이트	76.3	설*자	119동11**호(웅				
1	동산동	231	건물	슬레이트	2.5	1	천동,웅천지웰아 파트)				변경
_	0 2 0	201	담장	벽돌	7.2		· · · · · · · · · · · · · · · · · · ·				
			대문	철재	1.6	- 김*준	여수시 여서2로20, 5동2**호(여서동,				
			마당	콘크리트	80.5	1 11 T	금호아파트)				
			건물				12 110/				
			건물	슬래브 함석	86.9 67.6	-					
			건물	조립식	9.5	1					
			건물		39.0	+					
			대문	철재	3.4	1	여수시 봉계동				
2	동산동	229	대문기둥	벽돌	0.5	박*심	1**				기정
			대문슬래브	슬래브	1.6	1					
			담장	벽돌	1.9	1					
			마당	콘크리트	24.5	1					
			계단	콘크리트	0.4	1					
			건물	슬래브	86.9						
			건물	함석	67.6						
			건물	조립식	9.5						
			건물	슬래브	39.0						
2	동산동	229	대문	철재	3.4	여수시					변경
2	0 6 0	223	대문기둥	벽돌	0.5	' ' '					1.0
			대문슬래브	슬래브	1.6						
			담장	벽돌	1.9	1					
			마당	콘크리트	24.5	-					
			계단	콘크리트	0.4						
			건물	기와	43.5		서울특별시			10 5 4 1 2 7	
3	동산동	228	건물	함석	48.9	박*희	서대문구	근저당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지로2가)	기정
3	0.7.0	220	건물	슬래브	3.0	7*4	포방터2가길	느// 8 년	**은행	(여수중앙지점)	/1/8
			대문	목재	3.8	1	**(홍은동)			(
							서울특별시			10 5 11 1 2 7	
3	동산동	228	 건물	기와	43.5	박*희	서대문구	근저당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지로2가)	변경
J	0 11 0	220	122	/14	40.0	7"3	포방터2가길	느게이면	**은행	(여수중앙지점)	12.0
							**(홍은동)			. , , , , , ,	
4	관문동	976	건물	함석	37.2	여수시					기정
			건물	함석	66.3						
5	관문동	991	대문	철재	1.5	여수시					기정
5	11.5	991	대문기둥	설계 벽돌	0.4	977					/1/8
			<u> </u>	72	0.4						
6	관문동	990	건물	함석	73.4	여수시					기정
U	1110	330	~UE	□ ¬	70.4	-11/4					71.0
			건물	함석	51.0						
			건물	함석	118.8	1					
			건물	함석	36.0	1					
			담장	벽돌	6.0						
			대문	목재	4.1	1					
			수목	감나무	4.0						
7	관문동	973	수목	모과나무	1.0	안*식	여수시 관문동				기정
1	110	913	수목	동백나무	6.0	년"ㅋ	9**				/1/6
			수목	철쭉나무	18.0						
			수목	석류나무	1.0						
			수목	살구나무	2.0	1					
			수목	단풍나무	1.0	-					
			수목	기타나무	17.0	+					
			마당 건물	콘크리트 슬레이트	11.1						
			건물 담장	들데이트 벽돌	127.8 7.2	+					
8	관문동	974	대문기둥	벽돌 벽돌	1.0	이*자	여수시 관문동				기정
0	인단장	314	대문기당	역 출 슬래브	1.6	1 ~1*^F	9**				1/1/8
			대문	글데므 철재	3.2	†					
			건물	함석	118.3		여수시 관문동				
9	관문동	969	건물	함석	52.1	김*덕	9**				기정
			ਦਵ	пП	04.1		1				

	소:	재지	 물건의	구조및		소	: 유 자		이해관	계인	
연번	위치	번지	출신의 종류	규격	수량(m²)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비고
			건물	함석	37.1						
			대문	철재	3.2						
			대문	슬래브	0.5						
			대문기둥	벽돌	0.8						
			수목	금목서	1.0						
			수목	동백나무	5.0						
			수목	기타수목	5.0						
			마당	콘크리트	24.1						
			건물	함석	118.3						
			건물	함석	52.1						
			건물	함석	37.1						
			대문	철재	3.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9	관문동	969	대문	슬래브	0.5	광주구**	서구 상무대로	근저당권	**통운	서울시 서대문구	변경
			대문기둥 수목	벽돌 금목서	0.8	교회유지 재단	9**(쌍촌동)		주식회사	서소문동 58-**	
			구족 수목	등록서 동백나무	1.0 5.0	- /1112					
			 누목	공맥나구 기타수목	5.0	-					
			 마당	콘크리트	24.1	-					
			<u> </u>	군그니드	24.1			압류	성동세무서		
									**생명	서울 중구	1
							순천시 연향동	가압류	보험(주)	태평로2가 1**	
						임*일	1378	압류	순천세무서		1
						임*일	현대아파트	압류	순천시		1
10	관문동	968	건물	조립식	51.4		103동 1**호	근저당권	임*엽	구미시 송정동 183 동양한신아파트 105동 7**호	기정
							구미시 송정동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엽	183 동양한신아파트	압류	이천세무서		
							105동 7**호	압류	여수시		
							1000 1 —	압류	이천시 (경기도)		
10	관문동	968	건물	조립식	51.4	여수시	여수시				변경
			건물	슬래브	4.8						
			대문	철재	2.7	1					
11	코.ㅁㄷ	064.9	대문기둥	벽돌	1.0	기교체	여수시				7] 7]
11	관문동	964-2	대문	슬래브	1.3	- 김*현	동산동1**				기정
			계단	콘크리트	0.4						
			계단	콘크리트	0.7						

의 견 서

사업명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위치	여수시 동산동, 관문동 일원						
사업자	전라남도 여수시장]라남도 여수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의선세발 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1214호

국동항 내 장애물(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국동항 내에 무단 점유 및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선박)로 인해 어항 효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몰 위험이 있어, 소유자에게 제거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 1. 공고기가 : 2023. 4. 13. ~ 2023. 5. 19. (37일간)
-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88-24번지(국동항 내)
-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선박(선명 등 : 조국호 / 396톤 / 1994. 11. 1. 진수)
-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공고 종료 후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어촌· 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장애물(선박) 제거공고									
장 소 국동항 내(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88-24번지)										
장애물 종류	선박	(선명 등 : 조국호 / 39	96톤 / 1994. 11.	1. 진수)						
어항관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3-4								
처리 예정	일자	2023년 5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원	 B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선박)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소유자에게 제거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5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여수시 공고 제2023-12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3. 4. 14. ~ 4. 29.(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대장상주소)	붙임참조			
다. 처분의 원	인된 사실	건축물의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

연		대	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	년 황		
번	대지위치	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말소 일자
1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629	김두*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629	1층/1동	목조/세멘	주택	51.3	2023.2.10.
2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94	서용*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263	1층/1동	목조/초가	주택	21.56	2023.2.10.
3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801	윤넙*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801	1층/1동	목조/스레트	주택	23.1	2023.2.10.
4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306	김하*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306	1층/1동	목조/스레트	주택	52.03	2023.2.23.
5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091	김사*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091	1층/1동	목조/초가	주택	35.2	2023.3.6.
6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00	서공*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01-1	1층/1동	목조/스레트	주택	77.9	2023.3.14.
7	여수시 화장동 664	변태*	여수시 화장동 664	1층/1동	석조/슬레이트	주택	42.34	2023.3.14.
8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6-3	김원*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6-3	1층/1동	목조/스레트	주택	32.4	2023.3.15.
9	여수시 화양면	화양	여수시 화양면	1층/1동	벽돌/스레트	창고	162	2023.4.6.
	장수리 544-3	농협*	나진리 476	13/10	벽돌/스레트	창고	48.6	2020.1.0.
10	여수시 남면	이찬*	여수시 남면	1층/1동	목조/슬레이트	주택	41.4	2023.3.13.
	두모리 1455	-1 -	두모리 1455	1층/1동	벽돌/슬레이트	창고	9.2	

연		대	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	년 황		
번	대지위치	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말소 일자
				1층/1동	경량파이프조 /슬레이트	제조 업소	288	
11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180-1	김대*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524	1층/1동	벽돌/슬레이트	제조 업소	29.7	2023.3.15.
				1층/1동	벽돌/슬레이트	제조 업소	35	
12	여수시 화정면	최연*	여수시 화정면	1층/1동	목조/토기와	주택	30.3	2023.3.15.
12	여자리 701	최근^	여자리 684	1층/1동	목조/토기와	주택	43.2	2020.0.13.
13	여수시 공화동 698-1	김암*	여수시 공화동 698	1층/1동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주택	34.24	2023.3.16.
14	여수시 오림동 320-7	조영*	여수시 여서동 370, 주공아파트 209동 507호	1층/1동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주택	80.46	2023.3.21.
4.5	여수시 돌산읍	71 =11	여수시 돌산읍	1층/1동	세멘블록 /슬레이트	창고	47.9	0000 0 01
15	군내리 1437-1	강채*	군내리 1437	1층/1동	목조/슬레이트	주택	46.3	2023.3.21.
16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소율리 새마을*	여수시 돌산읍	1층/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노유 자 시설	99	2023.3.31.
	165-5	N U ≥ ^	율림리 165-5	1층/1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제1종 근생	99	
17	여수시 공화동 670	문제*	여수시 공화동 670	1층/1동	목조/함석	주택	30.28	2023.4.10.
4.0	여수시 화정면	T1 C2	여수시 화정면	1층/1동	목조/슬레이트	주택	42.2	2222 4 42
18	개도리 189-2	정명*	개도리 199	1층/1동	시멘트블록 /슬래브	창고	16.5	2023.4.12.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여수시공고 제2023 - 1222호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여수시 주소 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4.

여 수 시 장 (인)

1. 공고기간 : 2023. 4. 14. ~ 2023. 4. 28.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ган	명	도로	구간	1107171	부 여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시점	종점	사용기간		
돌산로 작금길	주재년열사길	군내리 1557	금성리 595	2023. 4. 14.~ 2028. 4. 13. (5년)	남자 최연소 독립유공자인 주재년열사를 기념하기 위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주소정보팀(☎061-659-335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명예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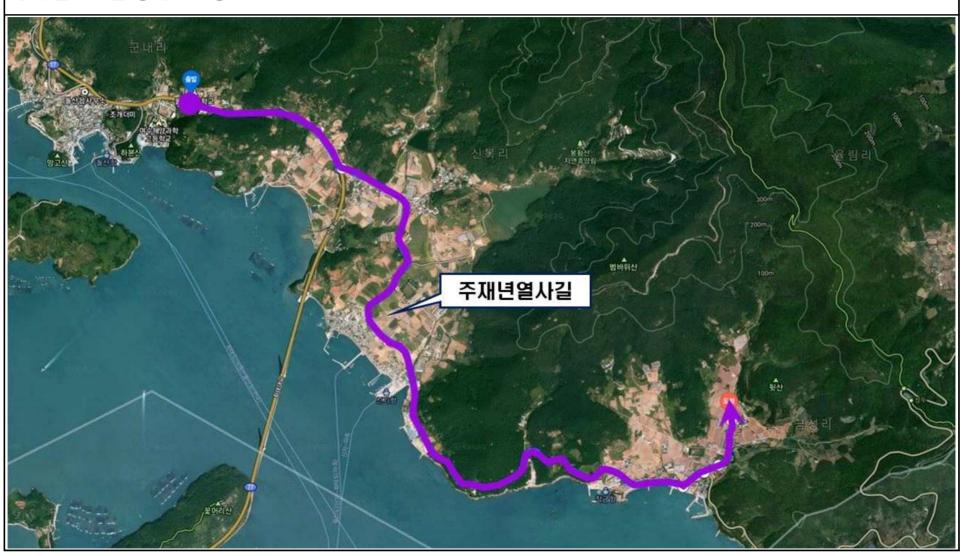
붙임1 명예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도로명	명예도로명	행 구 역	도로 위계	도 로 구 간				기초구간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 간격(m)	기초 번호	중심선	부여 사유
돌산로 작금길	주재년열사길	돌산읍	길	6.3km	5	군내리 1557	금성리 595	-	-	현황도 참 조	주재년 열사 기념 (사용기간 : 2023. 4. 14. ~ 2028. 4. 13.)

붙임2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현황도

주재년열사길(명예도로명)



여수시 공고 제2023-122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덕상이엔지(주)	전남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180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여수2015-10-01)	206211*****	2023.4.14.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3. 4. 14. ~ 2023. 4. 28.(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제2023-1230호

2023년 제 2기 임산부 · 워킹맘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운영 개요

- O 프로그램명: [소중한 아이, 행복한 엄마]
- 운영 기간 : '23. 5. 1.(월) ~ 6. 30.(금) **공휴일 제외**
- 운영 장소 : 여수시보건소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실)
- 운영 프로그램 : 임산부 프로그램 (임부요가, 캘리그라피, 모유수유교실) 워킹맘 프로그램 (워킹맘힐링요가)
 -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강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O 강 사 : 프로그램별 전문 강사

□ 수강생 모집

- 공지기간 : 2023. 4. 17.(월) ~ 4. 27.(목)
- 모집기간 : 2023. 4. 21.(금) 09:00 ~ 4. 27.(목) 17:00 (선착순)
- O 대 상 : 여수시민(주민등록을 여수시에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워킹맘)
- O 모집인원 : 임부요가(10명), 캘리그라파(15명), 모유수유교실(15명), 워킹맘 힐링요가(10명)
- O 수 강 료 : 무료(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 및 교재비 수강생 부담)
- 대상자 통보일 : 2023. 4. 27.(목) ~ 4. 28.(금) / 개인별 통보(SMS)
- <u>접수방법</u> :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 ※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교육강좌 ⇒ 보건소(임산부·영 유아 프로그램 접속)⇒ 신청(개인정보 입력)
- 문의전화 : 061)659-4087(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유의사항

- ▶ 프로그램 중복 수강 불가로 1인 1강의 원칙(예외: 정원 미달의 경우 신청 가능)
- ▶ 프로그램 첫 수강 시 신분증 지참(여수시민 확인용)
- ▶ 프로그램별 참여도가 낮을(정원 50% 미만) 경우 폐강 검토
- ▶ 무단결석 3회 이상 시 다음 프로그램 모집 시 참여 제한

붙임: 2023년 제 2기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및 모집인원 1부.

제 2기 「소중한 아이, 행복한 엄마」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모집인원

○ 프로그램 일정 및 모집인원

프로그램명	모집 인원	모집대상	시 간	내 용
모유수유	15명	임신부	수요일 13:30~14:30	 모유수유 방법 출산 후 유방관리 ※ 좌식의자로 등받이 필요시 개인 지참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15명	임신부	월요일 10:30~12:00	· 캘리그라피 예쁜글씨 응용 및 작품 만들기 ※ 재료비 본인 부담금은 내용에 따라 추가될수있음 ※ 좌식의자로 등받이 필요시 개인 지참
임부요가	10명	임신 24주 이상	화,목요일 14:30~15:30	• 임부요가, 라마즈 호흡법 • 출산 후 자세 관리 등 ※ 조산·임신중독증 등 조기위험 방지위해 주수제한
워킹맘 요가	10명	워킹맘	월,목요일 18:15~19:15	· 자세교정 ,심신안정 , 기혈의 순환원활 · 몸의군살제거 , 체내독소배출 , 노화방지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강사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여수시 공고 제2023-1231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봉계동 114-4번지 외 4필지 상 건축(변경)허가[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84호]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합니다.

2023. 4. 17.

여 수 시 장

1. 위 치 : 봉계동 114-4, 192-1번지

2. 도로면적 : 8m²

3. 도로길이 : 25.56m

4. 도 로 폭 : 0.1~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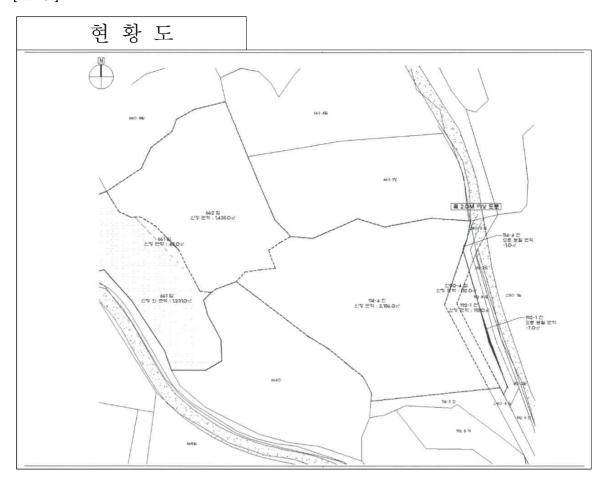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	적(m²)	비고	
1 12	7.11	712 714	공부면적	지정면적	M 32		
당초	계			2,311	7		
변경	계			2,311	8		
당초	봉계동	114-4	전	2,187	1		
22	ক/নাত	192-1	전	124	6		
변경	봉계동	114-4	전	2,187	1		
민/경	ক ⁄য় ত	192-1	전	124	7	면적변경	

※ 도로지정공고(당초) : 제2022-3041호 (2022. 11. 17.)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여수시 공고 제2023 - 1246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8.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486-1번지 일원	삼산면 손죽피서지 월파방지시설 등 설치공사	579.6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O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4. 18. ~ 2023. 5. 4.(17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4. 18. ~ 2023. 5. 4.(17일간)

O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O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4 1 11 1 1	0 = 1 = 10 -1 1-1	'' '	•								
	성명										
이거제 호이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	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 동법	시행령	제9조	의2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민	령 또는	인)
						귀하	여수시	자 <i>(;</i>	해양하	마레져	(과)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여수시 공고 제2023-1247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위해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여수시장(인)

1. 공고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 공고기간: 2023. 4. 18. ~ 2023. 5. 2.

3. 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연종합건설	신*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69, 2층
H기건중합신결 	[선 [*] 구 	204호(신림동)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17호가목

5. 처분사유: 계약 의무 미이행(공사명: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6. 처분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 청문실시

○ 일 시 : 2023. 5.16.(목) 10:30

○ 장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소

○ 청문주재자 : 여수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변호사 백영화

8. 유의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문 의 :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재생과 재생정비팀 박동훈(☎061-659-4560)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제출		T-	(전화번호	ž:)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 합니다.	법」 제27조제1형	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3-1252호

국동항 내 장애물(요트) 제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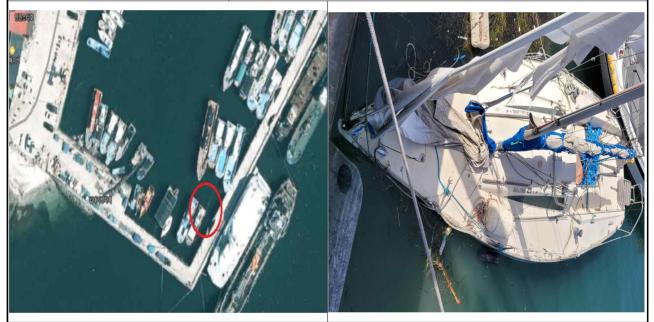
우리 시 국동항 내에 무단으로 점유 및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요트)가 국동항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문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 1. 공고기간 : 2023. 4. 18. ~ 2023. 4. 25. (8일간)
-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88-24번지 (국동항 내)
-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요트
-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공고 종료 후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어촌· 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	국동항 내(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88-24번지)					
적치물 종류		요트					
어항관리	청	형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3-47호					
처리 예정	일자	일자 2023년 4월 25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처분)				
위반내용 어촌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요트)는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문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4월 25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8 일

여 수 시 장 》

여수시 조례 제1857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57호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원"을 각각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 등급"제1급부터 제14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

조에서 정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u> 법」 제42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지방자치</u>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37조</u>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u>「지방자치</u>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의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생 략)	제 3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u>「공무원연</u> 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에서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 우는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 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전라남도의회의원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전라남도의회의원 전라남도의회의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란 <u>「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u> 경우에 한한다. ②(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8 일

여수시장 3~~ 기기가 시작인

여수시 조례 제1858호 붙임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58호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되는 기업
 -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 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 고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홍보 · 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

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8 일

여 수 시 장 9001117 전략인

여수시 조례 제1859호

붙임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59호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4호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차량 운영 경비 포함)"으로 한다

제9조제7호 중"「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2조와 「여수시세 감면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에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 자

제12조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아 혂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과한 법률_|-----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 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 제) 1. (삭 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4.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 경비 비(차량 운영 경비 포함)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고엽제환자 봉사차량 운영 9. 삭제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시 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복지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 당 조례에 따른다.

- 1. ~ 6. (생략)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

 조 및 「전라남도세 감면조 례」 제2조와 「여수시세 감 면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 차세 감면

8. ~ 13. (생략)

제11조(지급대상) ① 제10조에 따 저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u>에 따른</u>
8. ~ 13. (현행과 같음)
세11조(지급대상) ①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에 관한 법률 세4조제1항제4 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 람
- 2. 생략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제4 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족

4.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2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제12조(지급신청)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 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4. ~ 7. (현행과 같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제4 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 ②·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 신 설 2016. 12. 30.] 제14조(지급의 중지) ①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제15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 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조치) ① (생 략)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제14조(지급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u> </u>
제15조(변경신청)
<u>별지 제3호서식</u>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u> </u>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8 일

여 수 시 장 저고기() 기계

여수시 조례 제1860호

붙임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0호

역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	A. 법인의 적격성 (<mark>16)</mark>	A1. 법인의 유형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2. 법인의 이사회 구성(외부이사 구성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는?	4	3	2	1	*신생법인 제외
	B. 법인의 사업능력 (20)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주사무소 미련, 담당직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B3.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	4	3	2	1	
		B4.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시회복지사설이나 공약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신생법인 제외
		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1	*신생법인 제외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	C. 시설장 및 중시자 (2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시설운영능력은?	4	3	2	1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계획은 어떠한가?	8	5	2	-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의 적정성은?	8	5	2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4)	D1.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7	5	3	1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는?	7	5	3	1	
	E. 재정 (14)	El. 재정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E2. 운영할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은?	4	3	2	1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	6	4	2	-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	F. 지역사회 관계(14)	F1.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7	5	3	1	
		F2. 지역민(이용자)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	7	5	3	1	
라.종합 의견(2)	G. 종합 의견(2)	Gl. 심사위원 종합의견	2	-	1	-	
계			100	70	43	16	

^{*} A4, B4, B5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8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 산식 = 취득점수 + {신생법인 미해당 점수(제외)×(취득점수/총점수)}=최종점수

[별표 3]

위탁계약갱신 평가 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	A. 법인의 적격성 (9)	A1.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어떠한가?	3	2	1	-	
		A2.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3	2	1	-	
		A3. 법인에 수탁시설을 위한 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가?	3	2	1	-	
	B. 법인의 사업능력 (9)	B1.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3	2	1	-	
		B2. 기존 법인 수탁 및 재위탁 운영시설의 재정투자 정도는?	3	2	1	-	
		B3.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	3	2	1	-	
	C. 시설장 및 종사자 (24)	C1. 기존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지위보장 이행 정도는?	6	4	2	-	
		C2. 시설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 계획서 이행률과 적정성은?	6	4	2	-	
		C3. 시설 종사자의 법인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	2	1	_	
		C4. 시설의 전문 인력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3	2	1	-	
		C5.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 가?	3	2	1	-	
나. 시설운영 의 전문성		C6.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 경력 등 적합성 정도는?	3	2	1	-	
	D. 사업의 전문성 (24)	D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 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	3	2	1	-	
		D2.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3	2	1	-	
		D3.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3	2	1	-	
및 책임성		D4. 사업계획서 안의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3	2	1	-	
(64)		D5. 수탁기간 동안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3	2	1	-	
		D6. 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	2	1	-	
		D7. 수탁기간중 최근 5년간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은?	3	2	1	-	
		D8.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3	2	1	-	
	E. 재정 (16)	E1.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2	1	-	
		E2.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6	4	2	-	
		E3. 재위탁 시설에 대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3	2	1	-	
		E4. 재위탁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은?	3	2	1	-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	F. 지역사회 관계 (14)	F1.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	3	2	1	-	
		F2. 시설의 주민이용 편의성 및 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3	2	1	-	
		F3. 수탁기간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자원 활용정도는?	5	3	1	-	
		F4.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3	2	1	-	
라.종합 의견(4)	G.종합 의견(4)	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4	2	1	-	
A A					32	0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8 일

여수시장 차이 기가 사망인

역수시 조례 제1861호 붙임 역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1호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를 "보건·복지·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경제·건강·여가"를 "사회·경제·교육·건강· 여가"로 한다.

제3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성인문자해 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9. "노인교육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 및 고령사회"를 "보건복지·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노인보건복지"를 "노인보건복지·교육"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문화"를 "사회·문화 등 여가"로 한 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 3.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 제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을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을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정책센터"를 "노인복지·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	제1조(목적)
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	
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	
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u>보건</u>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u>보건·</u>	· 복지 · 교육
<u>복지</u>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
	음)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노인	② <u>사</u>
의 <u>사회·경제·건강·여가</u> 에	회 · 경제 · 교육 · 건강 · 여가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복지정책이어야 한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노인교육" 이란 65세 이
	<u>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u>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

〈신 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중 제5조(시행계획 수립) ------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 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u>보건복</u> 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추진하여야 하며.

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 용 교육, 성인문자해독, 인 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을 말한다.

9. "노인교육시설"이란 「노 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 다.

(현행과 같음)

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 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 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 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건복지·교 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u>노인보건복지</u> 및 고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제 시장은 노인의 <u>사회·문화</u> 활 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추진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제17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u>〈삭 제〉</u>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 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2. 학대노인의 <u>발견·보호·</u> 치료 및 사후관리
 -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노인 보호에 따른 지원
 -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 5. 노인학대 피해노인의 일시 보호시설 지정

1. ~ 5. (현행과 같음)
6 <u>노인보건복지 · 교육</u>
8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u>사회·문화 등</u>
여가
·.
1. ~ 4.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생략)

〈신 설〉

제24조<u>(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u> (생 략)

제26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의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제22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 <u>운영</u>
-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 3.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 (현행과 같음)

제26조(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 노인복지·교육 및

다.

-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38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 제38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 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 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 요한 사항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 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 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8 일

여수시장 사건기까지

여수시 조례 제1862호

붙임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2호

역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시설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해 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무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 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 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모 미만 시설물의 소유자 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 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 정할 수 있다. 단, 남녀 공용인 화 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 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설의 화장 실과 시설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 시설 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 하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 〈신 설〉 위탁 기본 조례」와 「여수시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 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 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 은 제외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 부착하여야 한다. 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영농폐기물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 일

여수시장 옷건기// 취망인

여수시 조례 제1863호 붙임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3호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 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1. 영농폐기물 발생량
 -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 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기(M) 열인

여수시 조례 제1864호 붙임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4호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2. 토・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 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경우
 -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8 일

여수시장자기까지막이

여수시 조례 제1865호 붙임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5호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 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 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 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홍보
 -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
 -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10 일

여수시장 2001

여수시 조례 제1866호

붙임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6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 제9호"를 "별표 15의2 제10호"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로 하고, "다음의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주최, 주관"을 "주최·주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며,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를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를 "시설소유자 등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서."를 "허가서"로 한다.

제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영업기간을"을 "영업기간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로,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혅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 제1조(목적)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 ------ 위해 「식품위 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 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10호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 다음 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1. 「문화예술진흥법ㅣ 제2조제ㅣ 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2조제1항----- 주최 · | 주관-----주최, 주관-----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 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 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 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 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 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하 서류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 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 어항법 |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 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 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다.

1 .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
: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 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
:: 시설소유
자 등과
2
3 .
허가서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영업기간 등	
	사용허가
	「청년고
용촉진 특별법 시 에 따른	행령」 제7조
, , _	
2	
영 업 기	간 은
	<u>.</u>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음식판매자동
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일

여 수 시 장 가 (27/17) 전 [10]

여수시 조례 제1867호

붙임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7호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여수시건강생활실 천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 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 4."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 2. 여수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6조(목표를 위한 역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 2.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
-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 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는 도시발전 전략추진
- 제7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 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 건강의 날 지정)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비만예방의 날」인 3월 4일을 『여수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 시행
 -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4.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 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 제17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8조(수당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현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원 일

여수시장 3~~ ///

여수시 조례 제1868호 붙임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8호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 도록 여수에서 채혈하여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 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 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

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여수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여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여수시의회의원
 -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야 한다.
- 제13조(헌혈 장소의 설치 · 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여수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14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 3.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
 -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 5.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5조(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

당 1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 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 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8 일

여수시장 20071100

여수시 조례 제1869호 붙임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69호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의 관할구역) 여수시 농지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읍·면· 동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3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동지역)·읍·면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4. 그 밖에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여수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수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3.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4. 농업법인

-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별표 와 같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 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④ 제3항에 따라 각 호별로 위촉된 위원수는 각각 전체 위원수의 35퍼 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6. 영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은 경우
 -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거나 보궐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 (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 에 재직한 경우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읍·면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읍ㆍ

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에 제6조제3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8 일

여수시장 2057/100

여수시 조례 제1870호 붙임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70호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농·어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 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3.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5.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 ·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 우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다.
-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 2.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1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 월 🔗 일

여수시장 가기가

여수시 조례 제1871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71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
 - 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 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13퍼센트까지)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	
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	제4호 및
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	<u>제5호</u>
다. 다만, <u>제4호</u> 에 따른 감면은	 .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
	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
	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
	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
	<u>액</u>
	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
	면(최대 13퍼센트까지)
<u>5</u> . (생 략)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